

## ▣ 다수공급자 물품계약(MAS) 제도

### I 정 의

-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, 선의의 가격,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, 이미 미국,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
-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, 성능,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써 납품실적,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

### II 대상물품 및 참가자격

- 조달청 MAS계약 공고번호에 따른 계약대상물품은 영상감시시스템 중  
①방범감시시스템, ②옥외감시시스템, ③옥내감시시스템, ④중앙감시시스템에 한함
- 참가자격 (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)
  - ①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」(조달청 고시 제2015-28호, 2015.10.07)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 (4617162201)로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물자를 등록한 제조업체
  - ②「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영상감시장치 (4617162201)로 직접생산증명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. 단,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
  - ③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(업종코드0036)자로 등록된 업체

## ※ 주의사항

- ① 각각의 계약대상물품에는 반드시 계약희망업체의 **직접생산제품 1개 이상이 포함**되어 있어야하며 직접생산제품이 미포함된 시스템은 협상품목 승인시 제외.
- ② '영상감시장치'의 경우 **품목의 단가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만**을 협상품목으로 신청
- ③ 만약 2천만원이 넘는 품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가격협상시 필요에 따라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요청 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품목에서 제외
- ④ 계약대상물품 4종의 시스템 구성이 맞지 않을 경우 협상품목에서 제외

### III

#### 계약상대자 선정

- 경영상태(70점) 및 납품실적(30점)을 평가하여 적격자  
경영상태 + 납품실적 = 85점이상인 자
-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며, 가격협상 결과 협상 기준가격 이내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
- 규격(모델)별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상 기준가격 이내로 가격을 제안한 규격(모델)에 대해서 계약체결

### IV

####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

- 품질·성능·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가격협상이 성립된 모든 적격자와 계약체결

**V****계약단가 인하**

- 계약기간동안 최저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가격인하가 가능함

**VI****MAS 계약물품의 2단계 경쟁제도**

- 1회 납품요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등록업체중 5개사 이상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자동선정된 2개사를 포함한 7개사 이상으로 제안요청하여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납품업체 1개사를 선정

**VII****다량납품 요구시 할인을 적용**

- 입찰자는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할인을 제시할 수 있음

**VIII****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 및 품목의 추가**

-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규격(모델)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
- 계약상대자가 품목추가를 요청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제출받아 가격협상과정을 거쳐 품목 추가를 할 수 있음  
단, 계약 후 60일 이후 추가가능

**IX****계약기간**

- 영상감시장치 계약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

**X**

**참고사항**

- 조합에서는 조합명의로 등록을 희망하는 회원업체의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, 또한 조합으로 MAS등록지도 신청시 관련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있음

\*문의처 :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☎ 02-454-5114